

IV 노상에 누워있는 자 등

편 집 : 손해사정사 박성정¹⁾

소 속 : 손해사정법인 가나

(서울민사지법 기준례, 1983년)

기본요소		과실비율	
		보행자	차량
노상에 누워있는 자	주 간	40	60
	야 간	60	40

판례요지	피해자 과실	사건번호
야간, 원고는 천호대교 상 오른쪽 3차선상에 고장난 차 세워 두고 2차선과 3차선 사이의 차선표시 부근에 서 있다가 시속70km로 달리던 피고 승용차에 충격, 사고지점은 차량 전용도로, 원고는 고장난 다른차 운전수와 이야기 하다 다가오는 차 못보고 다침.	50%	서울고법 86나1694
야간, 편도3차선 도로, 중앙선 부근에 술 취한채 앉아 있다 택시에 충격 사망.	50%	서울고법 90나27445
야간(20:00), 불빛도 없는 한적한 시골 편도 1차선 국도 한가운데 앉아 있다 발생한 사고	50%	서울지법 97나22927
심야(02:40), 술에 취하여 인적이 드문 통일로상에 쓰러져 있다가 사고 발생	60%	서울지법 의 정 부 지 원 87가합652
야간, 피해자 술에 취해 도로 가운데에 쓰러져 있었음, 편도1차선, 차량 미발견 역과함.	60%	서울고법 87 나1191
야간(03:00), 인천 서구 가좌1동 편도1차선도로, 제한속도 50km인 지점을 70km로 과속 주행하다 도로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충격함	60%	인천지법 8 8 가 합 13515
새벽(04:00)에 5km로 후진 중 차 뒤쪽 도로상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충격	60%	서울지법 북부지원 8 9 가 합

1) 경력 20년의 손해사정사, 교통사고감정사
 (前) PNS손해사정법인, (前) PNS법과학기술연구소, (前) 교통방송 및 보험신보 기고,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전문위원
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손해사정 전공(석사) “논문 :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연구(판례중심)”

		11088
심야(23:25)에 광명시 과명7동 편도2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50km로 주행중 1차선상에 드러누워 있는 피해자 충격	70%	서울지법 88가합11358
새벽(03:30)에 마포구 노고산동 편도3차선 도로를 0.1%의 주취상태에서 2차선을 60km로 주행중 술에 취한채 노상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충격	70%	서울고법89나18247
심야(00:30)에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편도 1차선 도로를 제한 시속 49km로 주행중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는 피해자 충격	70%	서울지법 남부지원 8 8 가 합 12746
편도1차선 지방국도, 야간, 술에 취하여 장난삼아 지나가는 차를 손을 들어 세우다가 반대차선으로 급제동하며 피하는 차의 뒷바퀴에 반대차선에서 왼발쪽 치임, 트럭 운전수도 50cm 전방에서 피해자가 손 들고 서있던 것 발견.	80%	서울고법 86나2584
야간(21:50), 주변에 주택이나 상가 등이 없고 가로등이 꺼져 매우 어두운 상태의 편도4차선 도로, 0.24%의 주취상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 안으로 들어갔다가 불상의 차에 치어 차로상에 넘어졌는데, 8분후 갑이 60km로 3차선을 주행하다가 충격한 사안	80%	인천지법 9 6 가 합 21160
야간에 조명시설이 없고 커브길이 막 끝나는 지점과 가까운 곳으로서 시야장애가 있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1차로 차도상에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다가 충격 당함. 피해자 과실 80%	80%	대법원 923다43722
비오는 야간에 도심의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3차로 도로의 횡단보도를 검은색 옷을 입고 술에 취한 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에 놀라 급제동을 한 승합차량 탑승자들로부터 구타당하여 횡단보도 상에 쓰러짐. 당시 위 횡단보도 부근은 피해자 때문에 교통이 혼잡한 상태였고 전방 3차로상에 정차한 버스운전사가 사고 차량에 위험을 알리는 수신호까지 하였음에도 사고차량이 차량의 진행신호만 믿고 1차로로 차로변경 후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충격, 피해자과실 55%	55%	대구고법 97나7982
피해자가 비 내리는 야간에 술에 만취하여 편도 1차로 상에 쓰러져 있다가 차량에 깔려 사망한 경우, 망인의 과실이 차량의 과실보다는 크다고 봄. 망인과실을 40%로 인정한 원심파기	40% 이상	대법원 2 0 0 0 다 60227
심야에 도심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음주상태에서 도로에 쓰러져 있었음. 가해 택시에 앞서 같은 차로를 선행하던 승용차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가 충돌을 피한 반면, 가해 택시는 6~7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역과, 피해자과실 65%	65%	대전지법 2003나1845